

문서번호	자치행정과-2794
결재일자	2016. 1. 2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주민자치팀장	★자치행정과장	행정관리국장
허윤미	강경애	강호철	01/29 고재식
협 조	동행정팀장 이동재		

2016년 지방보조금 지원 자체 추진계획



행 정 관 리 국
(자 치 행 정 과)

2016 지방보조금 지원 자체 추진계획

2016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(제17조, 제17조의 2, 제32조의2~제32조의10)
- 지방재정법 시행령(제37조의2~제37조의6)
- 지방보조금관리기준(행정자치부예규 제6호)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- 구청장방침 제23호[기획예산과-372(2016.1.8)호]

II 추진개요

■ 보조금 종류 및 지원대상

종 류	지 원 기 준	지 원 대 상(사업)
운영비 (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)	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 (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제32조의2 제2항)	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, 바르게살기운동광진구협의회,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
사업비 (민간경상사업보조)	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, 보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가. 새마을운동, 바르게살기운동, 자유총연맹, 성동광진구재향군인회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나. 한강수중정화사업 다. 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사업 라. 효행 장려 사업 마. 통일 교육 지원사업

※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의거 공모심의절차 제외 대상임.

Ⅲ

보조금 지원현황

2015년도 보조금 지원현황

(단위:천원)

단체명	지원금액		
	계	사업비	운영비
계	174,590	141,842	32,748
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	30,000	8,652	21,348
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	27,100	27,100	-
직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	5,000	5,000	-
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	28,000	28,000	-
바르게살기운동 광진구협의회	35,000	27,800	7,200
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	20,430	16,230	4,200
성동,광진구 재향군인회	7,200	7,200	-
해병전우회 광진구지회	4,110	4,110	-
법무부 법사랑위원 동부지역연합회	2,000	2,000	-
서울광진 청년회의소	4,200	4,200	-
재난구조협회 서울광진구지회	2,250	2,250	-
6.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진본부	3,800	3,800	-
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	5,500	5,500	-

2016년도 보조금 지원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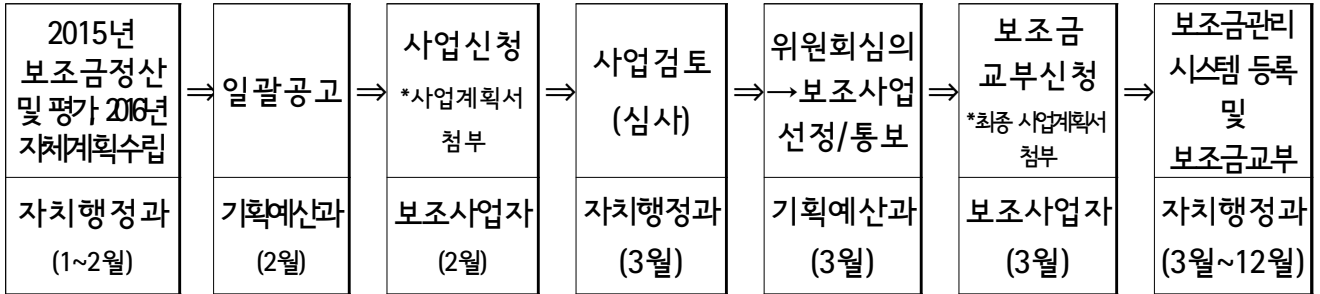
(단위:천원)

구 분(목명)	지원대상	지원예산
	계	174,590
운영비(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)	소 계	32,748
	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 인건비	1,779X12월=21,348
	바르게살기운동광진구협의회 인건비	600X12월=7,200
	자유총연맹광진구지회 인건비	350X12월=4,200
사업비(민간경상사업보조)	소 계	141,842
	국민운동단체 사업(새마을, 바르게, 자총)	119,982
	한강수중정화사업	3,270
	청소년 보호 및 활동 진흥사업	9,090
	효행 장려 사업	5,700
	통일 교육 지원사업	3,800

IV

세부추진절차

■ 보조금 지원 추진 흐름도



1 지방보조사업자 일괄공고 개요

■ 공고시기 : 2.11(목)

■ 공고방법 : 기획예산과 일괄공모

■ 공고내용 : 사업명, 기간, 보조금액, 사업내용, 단체자격, 자부담율 등

2 지방보조사업자 사업신청

■ 신청시기 : 2.11(목) ~ 2. 29(월)

■ 제출서류 : 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 및 단체소개서, 지원신청사업계획서 등
(별첨 1-1~3)

3 지방보조사업자 심사 및 선정

■ 선정시기 : 3월 중

■ 선정대상 :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규정된 국민운동단체 및 아래의 법령에
규정된 사업을 시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공모기간 동안 접수된 보조사업자

● 근거법령

- ▶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,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,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,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
- ▶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
- ▶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
- ▶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
- ▶ 청소년보호법 제48조 제1항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0조 제3항
- ▶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
- ▶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제3항

■ **선정방법** : 신청자의 신청서 및 전년도 정산, 성과평가결과를 검토 후 검토의견서 첨부하여 기획예산과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의 심의를 통해 선정

■ 심사기준

- 지방재정법,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부합 여부
-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일반원칙 준수 여부
- 조정시 2015년도 정산 및 성과평가결과 검토 반영 등

■ 심사내용

- 사업부서 검토의견의 적정성 검토
-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결정액 의결

4 지방보조금 교부

■ 교부시기

-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: 단체별로 분기별 교부
 - 민간경상사업비 :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월별, 분기별 교부
- ※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선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**제한기간(2016.2.13 ~ 4.13)중에 개최하는 행사의 보조금 지원 불가**

※ 국회의원선거관련 행위 제한사항(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)

[공선법 제86조 제2항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제2항

4.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, 사업설명회, 공청회, 직능단체모임, 민원 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

■ 교부절차

- 지원결정 통지 : 기획예산과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 → 자치행정과 (교부결정통지: 별첨 서식 2-1) → 사업단체
- 제출서류 :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최종 사업계획서, 보조금 교부 조건 이행확인서,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, 지방보조금 관리통장(사본), 청렴서약서 등(별첨 서식 2-2~4, 서식 3)
- 원칙적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으나,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음
-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,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고 200만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월별로 교부하며, 수행상황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

■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명시

- 보조금 교부조건 설정이 사업부서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,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예규)」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

■ 지방보조금 통장 및 전용카드 사본 제출

-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개설, 전용체크카드 발급
-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된 통장사본 제출

■ 보조금관리시스템(우리은행) 사용이 원칙

- 보조사업 전용 통장 및 전용카드 발급, 사용 내역 시스템과 연계
- 보조금 예산조회, 집행관리, 정산관리 제공 및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
- 보조금관리시스템 (<https://ssd.wooribank.com/gwangjin>)



5 지방보조금 수행사항 관리점검

회계관리

-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
- 지방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
-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사용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
-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
-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철저
- 제출받은 관리카드를 e호조시스템 등록하여 3년간 관리

수행상황 점검

-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수행상황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받아 점검
-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여부 확인하여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 및 담당자가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현장방문하여, 필요시 장부·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시달

지방보조사업 공시

- 시 기 : 예산·결산 확정·승인 후 2개월 이내
- 내 용 :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,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,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

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(지방재정법 제32조의 8)
 - ▶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등
 - ▶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
-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(지방재정법 제32조의 4)

※ 용도외 사용한 경우(예시)

-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
-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
-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

-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(지방재정법 제32조의 4)
 - ▶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, 중단, 폐지 및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
●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

- ▶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
⇒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▶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방보조사업자
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▶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,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·폐지, 구청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,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
⇒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●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

- ▶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, 또는 대리인, 사용인,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
- ※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
6 정산 및 성과평가

▣ 보조금 실적보고 및 정산

- 시 기 : 사업종료 후 2월 이내 또는 다음연도 10일 이내
- 제출서식 : 추진실적보고서, 정산보고서 및 자체평가서(별첨 6-1~3)
- 정산내용 :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검증
- 정산결과 : 부적합시 시정, 반환 등 조치 요구
- ※ 2015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는 2016년도 세외수입 처리

▣ 성과평가

- 시 기 : 사업완료(정산검사) 후 다음연도 5월말까지
- 대 상 : 지방보조금(국·시·비 보조사업 제외)
- 평가결과
 - ▶ 성과평가 결과를 <계속 지원 가능>, <지원축소>, <지원가능>으로 구분표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(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중단 등)
 - ▶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(자치행정과)를 작성하여 결정, 관리

붙임 보조금 관련 서식 1부. 끝.